

광주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528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염용표, 김준영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금전 지급 약정은 437,620,2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42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42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6. 14.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대출 잔금은 175,684,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이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2010. 3. 25.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E 유한회사는 2011. 11. 30. 위 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F 유한회사는 2012. 2. 29. 위 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는 2017. 3. 12. 위 채권을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66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C은 주식회사 H에 175,68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2018. 6. 20.경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았고, 주식회사 I는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2020. 2. 24.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차전24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2006. 9. 1. 5억 원, 2009. 10. 31.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9.경 C은 피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6. 4. 7.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타채10469호로 C의 의료법인 J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6. 6. 24.경 같은 법원 2016타채10933호로 C의 의료법인 K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7. 8. 18.경 같은 법원 2017타채12091호로 C의 재단법인 L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8. 4. 19.경 같은 법원 2018타채11161호로 C의 의료법인 M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8. 8. 13.경 같은 법원 2018타채12631호로 C의 N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9. 3. 13.경 같은 법원 2019타채11033호로 C의 재단법인 L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20. 2. 19.경 같은 법원 2020타채11011호로 C의 의료법인 O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고 전부금 합계 137,422,44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 무렵 피고와 C 사이에 금전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금전지급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437,620,2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수령한 전부금 합계 137,422,44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C이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 무렵 피고와 C 사이에 금전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효인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하여 압류, 전부하여 수령한 전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 C에게 2006. 9. 1. 5억 원, 2009. 10. 31.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에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C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채무명의를 만드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C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피고가 그 직장의 운영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전부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6. 5. 19.경 P요양병원으로부터 전부금 3,623,040원을 수령하고 이를 C의 부인 Q의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 그 외에도 피고가 수차에 걸쳐 Q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전부금 전액을 Q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점, Q가 피고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지급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C이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에게 5억 원에 대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해 줄 무렵 피고와 피고의 부인 R의 계좌에서 5억 원이 출금된 점, C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1억 원에 대한 변제각서에 2009. 7.경 발급된 C와 보증인 S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C이 2007. 2.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 및 피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수령한 금전 중 일부를 C의 부인 Q에게 이체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사실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채무명의를 만들어 주어 자신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은 심화시켰다거나 피고가 사실은 C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채무명의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C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C이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전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C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C이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재산의 감소 내지 소극재산의 증가, 즉 책임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 볼 수 없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하지 않았고, C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로 하여금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여 자신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별지

금전 지급 약정

아리 도표 내용과 같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차전247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2016. 2. 25.자 금전 지급 약정

C은 피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